

인천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1나590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태종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3. 29.

판 결 선 고 2022. 4. 26.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0가단13204 판결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6,927,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9.부터 2022. 4.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27,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3.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원인 일부를 변경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J생)는 피고(K생, 개명 전 이름: L)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원고의 셋째 딸이다.

나. 피고는 ① 2009. 6. 23.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2011. 8. 10. 인천 서구 E 외 4필지 지상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③ 2012. 3. 29.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 I호(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3.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8.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 매수대금 중 97,927,940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1, 3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그 매수대금 및 비용을 제공하고,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1, 3 부동산 매수대금 및 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대여금 97,927,940원, ② 부당이득금 1억 300만 원(=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제1 부동산 매수대금 및 비용 4,900만 원 중 이미 반환 받은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300만 원 +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제3 부동산 매수대금 및 비용 6,000만 원) 합계 200,927,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당심에서 청구원인변경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 항쟁 및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2021. 6. 21.자 및 2022. 3. 22.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이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살피건대,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565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대금 합계 2억 3,800만 원(= 이 사건 제1 부동산 매수대금 8,000만 원 + 이 사건 제2 부동산 매수대금 9,800만 원 + 이 사건 제3 부동산 매수대금 6,000만 원)을 제공하였고, 피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2억 3,80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 중 일부로서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제1, 3 부동산 매수대금 부분 관련 주장은 대체로 유지하되, 이 사건 제2 부동산 매수대금 부분의 청구원인을 대여금 청구로 변경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변경신청 전후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내지 금전거래 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이고, 다만 그 법률적인 해결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으며,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케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대여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증거에 갑 제14, 15, 17,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1. 7. 23. 소외 M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2억 2,7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잔금지급일 무렵인 2011. 8. 8. 원고가 N은행(이하 'N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97,965,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 당시 피고의 남편이었던 O의 계좌로 47,927,940원 합계 97,927,940원을 송금하였던 점, ② 피고와 O 사이의 이혼소송[제1심: 인천지방법원 2014드단3511(본소), 2014드단4378(반소), 항소심: 인천가정법원 2015르1091(본소), 2015르1107(반소), 위 사건은 항소심 법원의 2016. 6. 8.자 화해권고결정이 2016. 6. 28.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그 이혼소송이 계류중인 법원에서 '이 사건 제2 부동산 매수대금 2억 2,700만 원에 관하여, 2011. 8. 8. 원고로부터 97,927,940원을 빌려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2,900만 원 및 취득비용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진술한 점(갑 제17호증의 4, 갑 제20호증의 102 등 참조), ③ 원고의 위 송금 이후 피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위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1. 8. 8. 피고에게 97,927,940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이혼소송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당심에서는 원고로부터의 차용이 아닌 증여받은 돈이라고 다투나,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7,927,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가)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위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 부동산 관련 부분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 성립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갑 제4, 7 내지 9, 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9. 6. 10. 소외 P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5,5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잔금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중 1,000만 원은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데(갑 제20호증의 79), 원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인 2009. 6. 4. 자신의 보험해약환급금 74,397,311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그 잔금지급일 무렵인 2009. 6. 19. N은행으로부터 44,842,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4,400만 원을 2009. 6. 22.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9. 6. 23. 총 4,320만 원을 인출하여 매매잔금 및 비용으로 지출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이혼소송 당시 피고는 그 법원에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원고가 실제 소유자로, 2009. 6. 10. 피고의 명의를 빌려 소외 P로부터 5,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대금

전액을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명의만 피고 앞으로 등기한 것이므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진술한 점(갑 제17호증의 4, 5, 갑 제20호증의 29, 102 등 참조), ③ 피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임대수익 대부분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2017. 8. 25. 소외 Q에게 7,400만 원에 매도되어 2017. 9. 1.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Q로부터 받은 계약금 600만 원을 2017. 8. 26. 원고에게 송금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면서 원고가 그 대금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피고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된다(피고가 이 부분도 종전 이혼소송과는 달리 당심에서는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받은 것이라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부당이득반환 범위

앞서 인정된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 매수대금 및 비용으로 제공한 금액은 ① 2009. 6. 10.자 계약금 500만 원, ② 피고에 대한 2009. 6. 22.자 송금액 4,400만 원 중 피고가 2009. 6. 23. 매매잔금 및 비용 명목으로 인출한 4,320만 원 합계 4,82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7. 8. 26. 그중 600만 원을 반환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매수대금 및 비용 중 미반환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4,220만 원(= 4,820만 원 -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2009. 6. 22.자 송금액 4,400만 원 전액이 이 사건 제1 부동산 매수대금 내지 비용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4,400만 원 중 앞서 인정된 2009. 6. 23.자 인출금 4,3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만 원 부분도 이 사건 제1 부동산 매수대금 내지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제3 부동산 관련 부분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 성립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2. 3. 26. 소외 R로부터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5,68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이혼소송 당시 피고는 그 법원에서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은 원고가 실제 소유자로, 2012. 3. 26. 피고의 명의를 빌려 R로부터 5,68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대금 전액을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명의만 피고 앞으로 등기한 것이므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주장진술한 점(갑 제17호증의 4, 5 등 참조), ③ 피고가 이 사건 제3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임대수익 대부분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면서 원고가 그 대금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피고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인정된다(피고가 이혼소송에서의 주장과 달리 당심에선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부당이득반환 범위

앞서 인정된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3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5,68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5,6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2012. 3. 26.자 지급액 6,000만 원 전액이 이 사건 제3 부동산 매수대금 내지 비용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인정된 매수대금 5,6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20만 원 부분도 이 사건 제3 부동산 매수대금 내지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시효가 2019. 6. 23.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피고가 2009. 6. 10. 및 2009. 6. 23. 이 사건 제1 부동산 매수대금 내지 비용을 지출하고 2009. 6. 23. 피고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20. 6. 1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피고가 위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7. 8. 26.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받은 계약금 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6,927,940원(= 대여금 97,927,940원 + 이 사건 제1 부동산 관련 부당이득금 4,220만 원 + 이 사건 제3 부동산 관련 부당이득금 5,6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2. 3.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3.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예지희, 판사 김은경, 판사 권비룡